(재)창원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 - 123호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4차 모집공고

창원 소재 신산업 기업의 현장실습 지원을 통한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과 청년 인구의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2026년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년 12월 일

(재)창원산업진흥원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 모집기간: 2025. 12. 29.(월) ~ 2026.1.9.(금)

○ 모집인원: 청년 20여명 (**기업당 최대 3명**) **※ 채용 적격 청년 기준 선착순**

○ 지원대상: (기업) 관내 신산업 기업체

(청년) 관내 만19세 ~ 만39세 이하 **관내 미취업 청년**

※ 미취업이란. 채용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는 청년

○ 지원내용: 청년 인건비, 기업 담당자 멘토비, 청년 교통비 지원 등

○ 지원기간: 3개월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산업연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개월)**	기업, 청년 (상세 기준은 [Ⅱ.세부 지원내용 참고)	(1) 청년 인건비 **월 150**만원 (2) 기업 담당자 멘토 수당 **월 5**만원 **※ 총 3개월, 기업당 최대 3명 가능** (3) 청년 교통비 월 **1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세부 지원내용 참고

II 세부 지원내용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모집인원: 청년 20여명 (**기업당 최대 3명**)

※ 예산 소진 및 적격여부 심사 후 , 기업의 선정 인원 대비 지원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1) 기 업
-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 中 하단 「표준산업분류코드*」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 [참고] 3페이지. 지원조건 자료 참고
- 하단 「표준산업분류코드」로 등록한 기업체에 연간 1억원 이상의 매입 또는 매출 (2025년 기준)을 증빙 가능한 기업체(신산업 연관 전후방 산업군을 지원하기 위함)

2) 청 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관내(창원시) 미취업자

○ 지원기간: **최대 3개월**

○ 세부 지원내용

1) 기업 ┌ 청년 인건비: 월 150만원(기업 부담금 자율) × 3개월
└ 기업 멘토수당: 월 5만원 × 3개월

2) 청년 - 교통비: 월 10만원 지원 × 3개월

※ 모집 연장 및 중도퇴사자 발생시 지원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은 채용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현장직무 및 직무소양 교육 지원 (**참여청년 의무교육 참여 필수**)
- 교육내용: 현장 OJT 및 직무의 이해, 직무역량강화, 직업실무역량
  ┌ ❶ 현장직무교육: 현장 OJT 교육 등
  └ ❷ 직무소양교육: 직업트렌드, 커뮤니케이션 스킬, 업무분야별 직업실무 등
- 추진방법: 오프라인 교육
  ┌ ❶ *현장직무교육(10h): 현장 재직자를 통한 교육
  └ ❷ 직무소양교육(5h): 전문강사를 활용한 직무 교육 및 성인지 교육

※ 참여기업에서 현장직무교육을 담당하는 멘토(직원)에게 멘토수당 지급

○ 지원조건 ★확인 필수★

기업

[필수 요건]

- **창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25년 기준] 연간 1억원 이상의 매입/매출 증빙**이 가능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이 가능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됨
- 아래 **신산업 관련 *표준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거나, ****추가 지원 산업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신산업 연관 전후방 산업군을 지원하기 위함)
- 인건비 월 통상임금(연장, 휴일근무수당 등 제외) **'26년 기준 최저임금**(월급) 이상 지급 기업
- 4대 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보험) 가입 기업
  *단, 현장실습학기제 기업은 해당 인원에 한하여 산재보험만 가입하여도 무방

< 지원 산업군>

- IT, 물류, R&D 등 신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해당 산업군

※ 신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업종코드		업종
대분류	중분류	
제조업 (C)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정보통신업 (J)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0	방송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H)	H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50	수상 운송업
	H21	항공 운송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M)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 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추가 지원 산업군]

- 소부장, 항공, 에너지, 자동차, 기계, 원자력, 방위 관련 분야

기업

[참여 배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의 체불 및 세금 미납 기업
- 완전자본잠식상태 등으로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완전자본잠식상태 : 재무제표 상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이면 자본잠식으로 판단
- 신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가 아닌 사업장

<신청제외 대상(업종)코드>

업종 분류	업종코드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 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 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업,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서비스업, 오락관련 서비스업,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이용업,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청 년	**[필수 요건]** - **'26년 1월 1일** 기준 만19세 ~ 만39세 청년 -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창원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증빙) (사업기간 동안 창원시 주민등록 유지,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사업참여 1개월 이내 전입시 가능) - 대학교 재학생(주소지 무관) **[참여 배제]** - 현장실습 및 직접일자리사업(인건비 지원사업 등) 중복·반복 참여자 - 단기성 채용 형태 (산업기능요원 등) 근무자 - 참여기업에서 1년 이내 퇴사한 자 (공고일 기준) - 참여근로자가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Ⅲ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방법: 평가표에 의한 서류(정성/정량)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구 분	배점
재무건전성	◦ 매출액(2개년도 매출성장률 포함) ◦ 부채비율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 세금 납부 현황	40
복리 후생	◦ 통근버스, 교통비, 차량 유지비 ◦ 기숙사, 주택자금 지원 ◦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 유연근무제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재택근무 등 워라벨 관련 지원 제도 ◦ 일-가정-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지원 제도 등	10
청년고용 비율	◦ 청년고용 현황	10
기업 성장 및 발전 가능성	◦ 회사소개 및 주요생산품 ◦ 기술개발계획 및 발전 가능성 ※ 운송업 및 창고업은 아래 [별표1] 내용 참조	30
기술인증 및 과제수행실적	◦ 기술인증 및 정부과제 수행실적(최근 3년)	10
우대사항	◦ 장애인 고용기업, 일자리으뜸기업, 청년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여성기업인 : 각 인증기업 당 가점 2점	최대 8점

※ 동점일 경우, 기업 성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회사소개 및 주요생산품 > 기술개발계획 및 발전가능성)를 받은 기업 선정

※ 서류 미제출 시 배점 0점 부여 단, 재무제표 미작성 사업장은 매출성장률·부채비율 최저점 부여

[별표1]

- 표준산업분류코드 **'운수 및 창고업(H)'** 인 경우 - 기업 성장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자료로 정기안전보건교육 수료증 (※ 기타 법정의무교육 이수증 인정) 및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하여 제출할 것!

Ⅳ 추진일정

1) 모집공고 및 접수 : '25. 12. 29.(월) ~ '26. 1.9(금) 18:00까지

- 접수 기간 내 신청서 제출

↓

2) 기업 선정평가 : '26. 1. 3주차 예정

- 선정평가

↓

3) 결과 통보 : '26. 1. 23(금) 한(限) 예정

- 기업 선정 결과통보

※ 공고일 이후로 채용한 청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공고일 이전 채용된 청년은 지원 불가

↓

4) 사업안내 : '26. 1. 28(수) 한(限) 예정

- 선정기업 대상 사업 운영방안 등 안내(필수참석)

↓

5) 청년 채용 통보 및 적격여부 검토 : ~ '26. 1. 30(금) 까지

- 기업은 2026년 4월 1일까지 청년 채용 사실을 창원산업진흥원으로 통보해야 함

- > 기한 내 미채용 시 사업 지원 자동 종료

※ 모집 상황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음 (개별통보)

- 근로자 적격 여부 검토 : 근로자 채용 통보 후 진행

↓

6 사업 수행 : 지원종료 시까지(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 수행 : 지원사업 종료 시까지(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채용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창원산업진흥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된 참여기업이 수행 도중 사업 포기 및 지원 중단 상황 발생 시 지원 종료

※ 지원종료 시 추가지원을 위한 후보기업도 금번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 예정

※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 공고일 이후 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지원하며, 공고일 이전 채용된 청년은 지원 불가

V 사업 신청 및 접수

❍ 모집/접수기간: 2025. 12. 29.(월) ~ 2026.1.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www.cwip.or.kr - 사업신청 - 지원사업 신청)
  · 사업공고명 "신산업"으로 검색
- 홈페이지 접수가 어려운 경우 > 이메일(cej1225@cwip.or.kr) 제출

❍ 신청서류 **※ 해당 서류 원본 제출**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2	기업소개서 1부 및 관련 증빙자료	[서식 2]
3	참여기업확인서 1부	[서식 3]
4	참여제외대상 확인서 1부	[서식 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발급기준일 : '25. 12 .29(월) 이후
10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발급기준일 : '25. 12 29.(월) 이후
11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부	대상 : 전체근로자 조회기간 : 1년 전 ~ 사업신청일 예시) 2024.9.1.. ~ 2025.9.1.
12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2023년~2024년)** 1부 (단, 제출가능 기업에 한 해 '25년 재무제표 제출가능)	※ 재무제표상 매출 1억 이하 기업은 매입이 있으면 최근 2개년도 「매출전사세금계산서 합계표」 함께 제출
13	우대사항 등 가점에 필요한 서류 ※ 우대사항: 장애인 고용기업, 일자리으뜸기업, 청년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장애인 고용기업 : 해당 직원 복지카드 제출

VI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담 당 자: 창업인재양성팀 조은정 사원

(055-716-7745 / e-mail : cej1225@cwip.or.kr)

❍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상의 기재 착오·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연락 불능 등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소정의 양식은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wip.or.kr) 공고란에서 다운받은 후 사용. 끝.